

## 제 24 장 예외

### 제 24.1 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원산지 규정), 제4장(원산지 절차), 제5장(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6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7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제8장(무역구제)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해석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2. 제9장(투자),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11장(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3장(통신) 및 제14장(전자상거래)<sup>1)</sup>의 목적상, 그 각주를 포함한 GATS 제14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 제 24.2 조 필수적 안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

1) 이 조는 디지털 제품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이 국제 평화 또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또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

### 제 24.3 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정보를 당사국이 공개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제 24.4 조 과세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에 따른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 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범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양 당사국간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에 따른 권한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 불합치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 제2.2조(내국민대우)와 그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범위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리고  
나. 제2.11조(수출세)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4. 제2항을 조건으로

가. 제10.2조(내국민대우) 및 제12.2조(내국민대우)는 특정 서비스의 구매 또는 소비에 관련된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 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이 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특정 서비스의 구매 또는 소비에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해 자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 제9.3조(내국민대우) · 제9.4조(최혜국대우), 제10.2조(내국민대우) · 제10.3조(최혜국대우) 및 제12.2조(내국민대우) · 제12.3조(최혜국대우)는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 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 또는 상속 및 증여에 대한 세금 외의 모든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5. 제4항은

가. 조세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혜택에 대해 최혜국대우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개정이 제4항에 언급된 어떠한 조들과의 합치성을 개정시점에서 감소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그 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는

마. GATS 제14조라호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같이,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세금의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모든 과세조치의 채택 또는 집행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제2항을 조건으로, 그리고 제3항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제9.7조(이행요건)는 과세 조치에 적용된다.

7. 가. 제9.12조(수용) 및 제9.16조(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는 수용이라고 주장되는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항에 따라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 어떠한 투자자도 제9.12조(수용)를 청구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sup>2)</sup> 과세조치에 대해 제9.12조(수용)를 원용하려는 투자자는 제9.16조(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른 서면 의사 통지를 할 때에 그 과세조치가 수용과 관련되는지 여부의 문제를 권한있는 당국에 우선 회부해야 한다. 권한있는 당국이 그 문제를 검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검토하기로 동의하였으나 그러한 회부부터 6개월의 기간 이내에 그 조치가 수용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제9.16조(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른 중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이 항의 목적상, **권한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1)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또는 그의 승계인, 그리고
- 2) 페루에 대해서는, *경제재정부* 또는 그의 승계기관

8. 이 조의 목적상,

가. **세금 및 과세조치**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 1) 제1.4조(일반 정의)에 정의된 바와 같은 관세, 또는
- 2) 제1.4조(일반 정의)에 규정된 관세의 정의 중 나호 및 다호에 열거된 조치, 그리고

---

2) 과세조치가 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제9.12조(수용)와 관련하여, 다음의 고려는 적절하다.

가) 세금의 부과를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새로운 과세조치의 단순한 도입이나 투자에 대해 둘 이상의 관할권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조세 정책·원칙 및 관행에 합치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 특히, 조세 회피 또는 탈세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과세조치는 일반적으로 수용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 특정 국적의 투자자 또는 특정한 개인 납세자를 겨냥한 과세조치와는 반대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과세조치는 수용을 구성할 가능성이 낮다. 과세조치가 투자자 이루어질 때에 이미 발효 중이었고 그 조치에 대한 정보가 공표되었거나 달리 공개된 경우, 그 조치는 수용을 구성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나. 조세협약이란 이중 과세의 방지를 위한 협약이나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 또는 약정을 말한다.

## 제 24.5 조 국제수지 예외

1. 당사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위협에 처한 경우, 그 당사국은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대한 제한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제한조치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제한조치는 비차별적이고 그 기간이 제한되며,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르고, 적용가능한 대로 국제통화기금협정 조항과 부합해야 한다.

3. 제한조치 또는 그것의 변경을 유지하고 있거나 채택한 당사국은 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히 통지하고, 그것의 제거를 위한 시간계획을 가능한 한 조속히 제시한다.

4. 제한조치가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경우, 공동위원회에서 협의가 신속히 개최된다. 그러한 협의는 특히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해당 당사국의 국제수지 상황 및 이 조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제한들을 평가한다.

가.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의 성격 및 범위

나. 대외 경제 및 무역 환경, 또는

다. 이용가능할 수 있는 대안적 시정 조치

협의는 모든 제한조치가 제2항 및 제3항에 합치하는지를 다룬다. 외환, 통화 보유고 및 국제수지와 관련하여 국제통화기금이 제출한 통계 및 그

밖의 사실에 대한 모든 조사결과는 수락되며, 결론은 관련 당사국의 국제수지 및 대외 금융 상황에 대한 국제통화기금의 평가에 근거한다.